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허기회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 
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」에  
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,

□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

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 
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명확한  
민간위탁 기준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의 남발을 사전에  
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특히 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그 권한에 속하는  
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,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 
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 
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,  
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현명하게  
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